「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 제 안 자 : 평창군수
- ❍ 제안일자 : 2023. 10. 23.
- ❍ 회부일자 : 2023. 11. 7.

2. 제안이유

- ❍ 농촌고령화, 인구소멸 위기에 따라 농업·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 ❍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여 농정 보조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민·관 협치 강조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 ❍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 정비 및 마련
  - 사업의 근거 규정 정비(안 제6조제4호, 제12호)
  - 농촌인력에 관한 사항 등 지원사업 추가(안 제6조제25호 ~ 제26호)

4. 검토내용

가. 관련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의료서비스 확충, 고령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관련 지원사업 등의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룸.

나. 입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고령화 및 인구소멸로 인한 농촌의 쇠퇴를 막고 농업 및 농촌 위기에 대응하고 농업 분야의 진흥을 촉진하고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정 지원 시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군의 책무)**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군은 농업인 및 단체의 대의기구인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와 협치하도록 명시함.

❍ 안 **제6조(농업·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제25호와 제26호를 신설하여 ‘농업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 제공사업’ 과 ‘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는 관계 법령[1]에 의거하여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업에 대한 군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이라 생각됨.

❍ 안 **제7조(정책심의회)**는 제1항에서 「농업식품기본법」 제15조(정책심의회)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고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업식품기본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과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이 부의를 요청한 사항' 을 추가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정의 취지가 인정되고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으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농어업인의삶의질법」, 「지방재정법」, 붙임 1 참조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

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중앙 정책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 정책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말한다)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군·구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도 정책심의회와 시·군·구 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농어업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